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 1)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찰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등을 말함

나. 생활인구 요건(안 제2조)

- 1)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 2)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말함

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시책 및 지원에 대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2)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3)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4)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여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6)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허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8)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을 말함

마. 기타 사항(안 제16조~제17조)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함
- 2)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생활인구의 산정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시·군·구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2. 해당 연도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재원 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

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시·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2. 해당 연도 시·도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재원 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지원계획 및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제7조3항 및 제8조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시·군·구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국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시책 및 지원에 대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또는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거친 협약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일괄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의 설립 기준 및 인가 등)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

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신설비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유지의 우선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가구원 수별 매각 면적 기준
2.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3. 그 밖에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며, 우선 매각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운영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또는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장

제17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3.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지원
4.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원

5.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지원

6. 생활인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7.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제출 시기에 대한 특례) ① 영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대해서는 ‘1월 말’을 ‘5월 말’로 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대해서는 ‘2월 말’을 ‘6월 말’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국가기본계획의 기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4 - 3522